

1

유치기관 등록 갱신 방법 안내 (홈페이지)

1) 인터넷 설정 확인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
- <http://medicalkorea.khidi.or.kr> 웹사이트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2) 메디컬코리아(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 <https://medicalkorea.or.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등록갱신신청” 메뉴 통하여 기본정보 수정
- 구비서류 참고하여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압축 후 업로드

3) 주의사항

- 항목당 용량이 30mb 이상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제한
- 공란이 없도록 수정 및 작성 필요



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

현재위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

기본등록 정보 중 변경사항을 수정하신 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시요양시 다운로드](#)

의료기관명*	국문 의료기관명 (공백문자제외됩니다)	영문 Medical Korea
구분*	<input type="radio"/>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radio"/> 종합병원 <input checked="" type="radio"/> 병의원 <input type="radio"/> 치과병원 <input type="radio"/> 치과 의원 <input type="radio"/> 한방병원 <input type="radio"/> 한방 의원 <input type="radio"/> 의원 <input type="radio"/> 기타 ()	
법인명	법인명	기관개설일 2017-02-07
설립유형*	<input type="radio"/> 국립 <input type="radio"/> 사립 <input type="radio"/> 지방공사 <input checked="" type="radio"/> 학교법인 <input type="radio"/> 특수법인 <input type="radio"/> 사단법인 <input type="radio"/> 재단법인 <input type="radio"/>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radio"/> 재민 <input type="radio"/> 기타 ()	
대표자(*)	국문 대표자국문1 대표 공통대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공통대표	생년월일(*) 122456 - 11 (1977.04.11) 첫번째 1자리 국문대표자 공통대표자명 사립자등록번호* 123 - 45 - 67890
법인등록번호	112321 - 1212121	
주소(*)	국문 지역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8159 <input type="text"/>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상영2로 187 영문 187, Oongsangmyeong 2-ro, Oosong-eup,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	팩스번호(*) 02 - 888 - 888 간담부담 요청 기관번호(*) 12345678
대표전화번호(*)	0600 - 6767	이메일주소 medicalkorea@khidi.or.kr
외국인환자용대 전화번호	0600 - 6767	
홈페이지주소	홈페이지주소	
병상수(병)	총병상 1 V부실 2 1인실 3 2인실 4 중환자실 5 수술실 6 외국인환자전용 ?	
의료기관 인증여부	* 인증기관1 * 인증기관2	인증기간 2014-02-01 ~ 2014-02-15 인증기간 2014-02-12 ~ 2014-02-17

2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의료기관용)

□ 법적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외국인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 ①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및 ③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 하는 활동임

□ 위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 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①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제외
-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
 - *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①진료예약·계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행위
-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3

관련 법 조항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